

사천시농정심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

의안 번호	3
----------	---

제출일자 : 2000. 1. 29

제 출 자 : 사 천 시 장

1. 제안이유

농어촌발전심의회 설치에 관한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관련 규정이 폐지되고 농업·농촌기본법(법률 제5,758호)에 의한 농정심의회에 관한 규정이 2000. 1. 1부터 시행됨에 따라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근거한 사천시농어촌발전심의회설치및운영조례를 폐지하고 농업·농촌기본법에 근거한 사천시농정심의회설치및운영조례를 제정함.

2. 주요골자

가. 심의회의 기능(안 제2조)

- (1) 농업·농촌발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심의(농업·농촌기본법 제43조)
- (2) 농정에 관한 연차보고서 심의(농업·농촌기본법 제45조)
- (3) 생활환경정비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농어촌정비법 제32조)
- (4) 농지이용계획 수립에 관한 심의(농지법 제13조)
- (5) 농림사업실시규정에 의한 사업계획 및 예산요구에 관한 사항의 심의
- (6)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나. 심의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3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중 1인은 부시장, 다른 1인은 위원중에서 호선함.(안 제3조)

다. 심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품목별 분과위원회를 두어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 사전 실무검토 및 조정 등을 함.(안 제4조)

라. 사천시농어촌발전심의회설치및운영조례를 폐지함.(안 부칙 제2항)

3. 법적근거

가. 농업·농촌기본법 제43조 및 부칙 제10조

나. 농업·농촌기본법시행령 제40조

4. 조례(안) : 별첨

사천시농정심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업·농촌기본법 제43조 및 동법시행령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사천시농정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농업·농촌발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심의
2. 농정에 관한 연차보고서 심의
3. 생활환경정비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
4. 농지이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5. 농림사업실시규정에 의한 사업계획 및 예산요구에 관한 사항
6.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 (구성) ①심의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3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중 1인은 부시장이 되며, 다른 1인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1. 관계 행정기관의 장 2인이내
2. 생산자단체의 장 10인이내
3. 농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지역전문가 5인이내
4. 지역농업을 선도할 수 있는 농업인 대표 11인이내

④제3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4조 (분과위원회) ①심의회에 두는 분과위원회와 그 위원 정수는 다음과 같다.

1. 농업정책분과위원회 7명
2. 유통분과위원회 6명
3. 축산분과위원회 6명
4. 기반정비분과위원회 6명
5. 산림분과위원회 6명

6. 인력육성분과위원회 6명

②위원은 2이상의 분과위원회 위원을 겸할 수 있다.

③분과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 사전 실무검토 및 조정 등을 하며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5조 (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 ①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간사 등) ①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간사는 농정과장이 되고 서기는 농정기획담당주사가 된다.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8조 (수당 및 여비) 심의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사천시위원회설비변상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사천시농어촌발전심의회설치및운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